# 액법·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관련

한국LP가스공업협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양 법률 모두 '11.05.24 공포, '11.11.25 시행)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우리업계와 관련된 내용을 현행·개정안 조문을 비교 발췌 요약 게재한다.

## 액법·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시행령

1)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의 대상범위 및 등록기준 마련 (안 제3조의3)

| 현 행 | 개 정 안 |
|---|---|
| 〈 신 설 〉 | 제3조의3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①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대상 범위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운송을 위탁받은 경우는 제외한다.<br>②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br>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일 것<br>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자 일 것<br>3.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위탁운송사업자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할 것 |

2) 보험의 종류 및 가입 대상 신규 (안 제16조)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6조 (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와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br>가. 용기(자동차연료용·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이동식부탄연소기용 또는 공업용·선박용 용기는 제외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br>나. (생 략)<br><br>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br>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제1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자<br><br>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제1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br><br>다. (생 략)<br>라.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br><br>②~⑤ (생 략) | 제16조 (보험의 종류 등) ① ----------<br>----------.<br>1. ----------<br>----------<br>----------<br>----------<br>----------<br>-----.<br>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br>----------<br>----------<br>----------<br>나. (현행과 같음)<br><br>2. ----------.<br>가. ----------<br>----------제외한다),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br>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제1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br>다. (현행과 같음)<br>라. 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시공자 및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br><br>②~⑤ (현행과 같음) |

3) 판매가격 보고 대상의 종류와 보고 내용 신설(안 제18조의2)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신 설 〉 | 제18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br>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br>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br>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br>3.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br>②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은 별표 3과 같다.<br>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액화석유가스의 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한다.<br>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충전사업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 및 충전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별도의 거래조건을 적용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br>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 및 집단공급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br>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판매사업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과 판매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br>④ 제3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별표 4와 같다.<br>⑤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에 위탁한다.<br>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별표 3] 판매가격 보고 대상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제18조의2 제2항 관련)

| 보고 대상자 | 보고 대상 액화석유가스의 종류 | 보고내용 | 보고방법 | 보고기한 |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2호) | 액화석유가스의 종류별 부피단위(ℓ) 정상 판매가격 |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수시(가격변경시 6시간이내)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 ○가정·상업용 액화석유가스(1호)<br>○캐비넷히터용 액화석유가스(2호) | 해당 월의 액화석유가스의 종류별 중량단위(kg) 정상 판매가격 |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매월 1일 |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 가정·상업용 액화석유가스(1호) | 해당 월의 액화석유가스의 종류별 체적단위(㎥) 정상 판매가격 |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매월 1일 |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 ○가정·상업용 액화석유가스(1호)<br>○캐비넷히터용 액화석유가스(2호) | 해당 월의 액화석유가스의 종류별 중량단위(kg) 정상 판매가격 |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매월 1일 |

※ 비고

1. "전자보고" 란 인터넷(E-mail, Web), VAN을 이용한 보고를 말하고, "서면보고" 는 전자보고를 제외한 전화, Fax 등을 이용한 보고를 말한다.
2. "정상 판매가격" 이란 별도의 거래조건(카드결제, 셀프충전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운송하는 기준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3. 하나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별로 보고한다.

[별표 4] 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등(제18조의2 제4항 관련)

1. 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및 공개시기

| 공개 대상 | 액화석유가스의 종류 | 공개내용 | 공개시기 |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전체 평균 판매가격 |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2호)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전일에 판매한 액화석유가스의 평균 판매가격 | 매일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별 판매가격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 | 수시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전체 평균 판매가격 | ○가정·상업용 액화석유가스(1호)<br>○캐비넷히터용 액화석유가스(2호)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이번달에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평균 판매가격 | 매월 3일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별 판매가격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 | |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전체 평균 판매가격 | 가정·상업용 액화석유가스(1호)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이번달에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평균 판매가격 | 매월 3일 |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별 판매가격 |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 | |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전체 평균 판매가격 | ○가정·상업용 액화석 유가스 (1호)<br>○캐비넷히터용 액화석유가스(2호)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이번달에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평균 판매가격 | 매월 3일 |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별 판매가격 |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 | |

## 2.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공개방법

**가. 액화석유가스의 판매가격은 인터넷, DMB, 모바일 등 전자매체 및 간행물, 인쇄물 등 서면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별로 공개한다.**

○ 시행규칙

1)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위반업체 공표 (안 제47조의2)

| 현 행 | 개 정 안 |
|---|---|
| 〈 신 설 〉 | 제47조의2(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 등의 공표)<br>①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고, 그 밖에 관보나 공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br>1. 법 위반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는 제목<br>2. 법 제3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의 종류<br>3. 위반사업자(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br>4. 위반내용<br>5.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별표 10 및 별표 11의 행정처분 내용)<br>6.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기간(행정처분이 확정된 일자 및 사업정지기간 또는 행정처분이 과징금일 경우 별표 10의 행정처분기준 및 별표 11의 과징금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에 해당되는 사업정지기간을 말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공표기간으로 한다.<br>1. 사업정지처분인 경우 : 사업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br>2.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 : 해당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별표 11에 따른 사업정지기간 이상<br>3. 등록취소처분인 경우 : 6개월 이상<br>③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2)장애인 등의 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 제한 규정 합리화 (안 제53조)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3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 제한)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 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 단서 신설 〉 | 제53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 제한) ----------. 다만, 제5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최초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4. (생 략) | 1.~4. (현행과 같음) |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국가유공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해당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중 1대 | 5. ----------직계존비속,- |
| 가.~마. (생 략) | 가.~마. (현행과 같음) |
| 6~7. (생 략) | 6~7. (현행과 같음) |

3) 별표 3, 용기전용 운반자동차 소유 명확화

| 현 행 | 개 정 안 |
|---|---|
| 다)~마) (생 략) | 다)~마) (현행과 같음) |
| 바) 충전능력에 맞는 수량의 용기전용 운반자동차를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여야 하며, 용기전용 운반자동차에는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도색에 의하여 가로·세로 5㎝ 이상 크기의 문자로 표시할 것. 〈 단서신설 〉 | 바) ----------. 다만,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1대 이상을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여야 한다. |

4) 별표 20,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

|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20]<br><br>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제43조 관련)<br><br>〈 신 설 〉 | [별표 20]<br><br>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제43조 관련)<br><br>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이하 "가스공급자"라 한다)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br>가. 충전용기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려면 가스누출 여부, 검사기간의 경과여부 및 도색의 불량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불량충전용기는 수요자에게 공급하지 아니 하여야 하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 적합하지 아니한 불량충전용기는 그 충전사업소에 반송할 것<br>나. 수요자의 시설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검여부를 확인하고 충전용기를 사용시설에 접속(내용적이 20L 미만인 용기와 건축물 내외부를 이동하여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요자의 시설에는 가스공급을 하지 아니할 것<br>다. 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려면 그 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의 검사여부를 확인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한 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에는 가스를 공급하지 아니할 것 |
| 1. (생 략)<br>2. 용기로의 공급기준<br>가. 안전공급계약의 체결<br>1)~6) (생 략)<br>나. (생 략)<br>다. 공급설비의 설치와 관리<br>1) 가스공급자는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면 공급설비를 자기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공급계약의 체결 당시 공급설비가 용기가스소비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에도 공급 설비는 가스공급자가 관리하여야 한다.<br>2)·3) (생 략)<br>라.~바. (생 략) | 2. (현행 제1호와 같음)<br>3. 용기로의 공급기준<br>가. 안전공급계약의 체결<br>1)~6) (현행과 같음)<br>나. (현행과 같음)<br>다. 공급설비의 설치와 관리<br>1) ----------별표 15 제1호에 따라 관리 ------. ----------.<br>2)·3) (현행과 같음)<br>라.~바. (현행과 같음)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3. (생 략) | 4. (현행 제3호와 같음) |
| 〈 신 설 〉 | 5.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공급방법은 다음과 같다.<br>가.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2조제7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이외의 자로부터는 벌크로리로 소형저장탱크에의 액화석유가스 운송을 위탁받을 수 없다.<br>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벌크로리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도색에 의하여 가로·세로 5cm 이상 크기의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br>다. 별표 22 제4호나목2)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을 받은 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br>라. 별표 3 제1호나목2)하)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
| 〈 신 설 〉 | 6. 제2조제7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운송을 위탁받은 경우 공급방법<br>가. 제2조제7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이외의 자로부터는 벌크로리로 소형저장탱크에의 액화석유가스 운송을 위탁받을 수 없다<br>나. 별표 22 제4호나목2)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을 받은 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br>다. 별표 3 제1호나목2)하)에 따른 규정을 준 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br>라. 법 제11조에 따른 공급자의무는 운송을 위탁한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시행령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구체화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8조 (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의 보험으로 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br>1. 법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br>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br>〈신 설〉<br><br><br><br>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br>③ (생 략)<br>④ (생 략) | 제18조 (보험의 종류 등) ① (좌 동)<br><br><br>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br>1. (좌 동)<br><br>2. (좌 동)<br>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용기등을 수입한 자 중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한 자(제15조제1항 제2호·제4호·제5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br>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br>③ (좌 동)<br>④ (좌 동) |

○ 시행규칙

1) 공인검사기관의 종류에 LPG충전시설의 자율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의 종류를 추가함(안 별표36 제2호)

|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36]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검사장비 및 자산 등(제58조제4항 및 제61조제2항 관련)<br>1.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br>(이하 생략)<br>2. 공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 | [별표 36]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검사장비 및 자산 등(제58조제4항 및 제61조제2항 관련)<br>1.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br>(이하 좌동)<br>2. 공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 |

| 검사구분 | 기술인력 | 검사장비 |
|---|---|---|
| (생 략) | |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자율검사대행 | (생 략) | (생 략) |
| 〈신 설〉 | 〈신 설〉 | 〈신 설〉 |

3. (생략)

| 검사구분 | 기술인력 | 검사장비 |
|---|---|---|
| (좌 동) | |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자율검사대행 | (좌 동) | (좌 동)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자율검사 대행 | ○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관계업무에 2년 이상 또는 가스 관련 검사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br>○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간 검사대상자수는 2천개소마다 1명 이상 | ○기밀시험설비, 가스누출검지기, 온도계, 압력계, 절연저항측정기와 그밖의 검사기구 및 계측기기류 |

3. (좌 동)